

자 진 신 고 서

| | | | | | |
|----|--|------|--|-----|--|
| 성명 | | 생년월일 | | 연락처 | |
| 주소 | | | | | |

1. 자진신고 내용

- 회사명:
- 일한 날짜:
- 임금 수령액 및 수령방법:

2. 실업인정신청일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

3. 자진신고를 하는 이유 (해당란에 체크하세요)

-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늦게 알아서
- 부정수급 사실이 발각될 것 같아서
- 회사, 작업반장 등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알려주어서
- 기타()

1. 본인이 오늘 진술한 위 내용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에 따른 실업급여의 지급제한,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안내받았으므로, 본 건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합니다.

2. 상기 진술내용에 허위나 거짓이 있을 경우, 고용보험법 제 108조 및 제11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.

년 월 일

본인의 상기 진술내용에 거짓이 없으며,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진술인 : (인 또는 서명)

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 귀하